

VIII-5 연금

20세이상 60세미만인 사람은 외국인이라 해도 연금의 가입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가입하는 연금에는 후생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1. 후생연금보험

5명이상의 회사원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20세이상인 사람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인 경우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의 대체로 3/4 이상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근무처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지만 그 액수는 노동자의 급여나 보너스의 액수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또 보험료의 지불은 근무처를 통해 진행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

후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액수는 소득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한달 14,660엔(2009년도)입니다. 수입이 적은 경우 등 보험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에 따라 보험료의 전액 혹은 일부가 면제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금담당창구에서 확인해주시시오.

3. 탈퇴 일시금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에는 「탈퇴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체재중에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개월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후 2년이내에 수속함에 따라 청구하면 돈이 지불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정촌사무소 혹은 사회보험사무소의 연금담당창구에서 확인해주시시오. (부록 ○페이지)